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68회 제1차 정례회 (2024. 6. 1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하나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4-64
- 나. 제안자: 마포구청장
- 다. 제안일자: 2024년 5월 24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4년 6월 18일(화)

2. 제안사유

(가칭)마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미추진 결정으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기금에 편성된 토지매입비의 집행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가칭)마포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53억원, 2022년 감정평가 탁상자문) 및 건물신축비(41억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가 90억원 이상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필요 전용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투자 대비 인프라 확충 효과가 저조하고 구 재정부담이 과다하여 미추진 결정됨.

- 나. 토지매입비(서교동473-43, 383.5㎡, 국유지)로 편성된 자산취득비 5,281,340천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5,281,340천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4.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5. 검토보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제출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칭)마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미추진 결정으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기금에 편성된 토지매입비의 집행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동 사업의 추진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가칭)마포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53억원, 2022년 감정평가 탁상자문) 및 건물신축비(41억 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가 90억 원 이상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필요 전용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투자 대비 인프라 확충 효과가 저조하고 구 재정부담이 과다하여 미추진 결정되었음.
- 따라서, 당초 공유재산관리기금의 토지매입비(서교동473-43, 383.5㎡, 국유지)로 편성된 자산취득비 52억 8,134만 원을 감액하는 수입계획 변경과 이와 연동하여 예치금 52억 8,134만 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각각의 변경사유를 보건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7.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